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는 공무원(시설직) 및 기간제근로자(장애등록상담직, 사업장상담직)를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공무직	기간제	
	시설직 주임(나)_기계	장애등록상담직	사업장상담직
채용지사	대전세종지역본부	동청주시사	충주시사
채용인원	1	1	1
임용예정일	'24. 8. 12.(월)		

※ 동일 일자 대전세종지역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 각 분야별 채용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행업무

구분		수행업무
공무직	시설직 주임(나)_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옥 시설물 점검 및 운전·보수(응급조치 등), 기타 시설물관리 관련하여 부여받은 업무 ※ 인력 운영상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장애등록상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록 심사를 위한 자료발급 대행,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제공 등
기간제	사업장상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

□ 지원자격(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공 무 직	시설직 주임(나)_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_기계, 가스
기 간 제	장애등록 상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정보·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참고 2’ 참조)
	사업장상담직	

※ (경력산정 기준)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인정되는 자격증(시설직)

분 야	자 격 증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 단계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4명 미만 채용으로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쏴전형	5/10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 단계	가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초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서류 전형	5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 전형	5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서류 전형	5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귀화한 본안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 전형	5
자립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 전형	5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7. 15.)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2. 근로조건

□ 계약기간

- 공무원: 기한의 정함이 없음
 -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 정규임용
- 기간제근로자
 - 장애등록상담직: '24. 8. 12.(월) ~ 25. 9. 29.(월)
 - 사업장상담직: '24. 8. 12.(월) ~ 25. 5. 19.(월)
 - ※ 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휴직자 조기 복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과 무관)

□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공 무 직	시설직 주임(나)_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 준용* * 교대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육 근무 인원에 따라 2교대로 근무할 수 있음
기 간 제	장애등록 상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 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이며, 조기 복직시 계약기간 만료(해지) 및 근로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과 무관
	사업장상담직	

□ 보수월액

(단위: 원)

구분	대전세종지역본부	동청주시사	충주시사
	시설직 주임(나)_기계	장애등록상담직	사업장상담직
보수월액	2,480,000	2,324,000	

- ※ 교대근무자가 근무편성표에 의하여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 지급[교대근무 유형에 따라 수당내역 상이]
-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야근수당만 지급 가능),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임

□ 근무장소: 본인이 지원한 공단 지사

※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 바랍니다.

3.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 용	일 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홈페이지(https://nps.recruiter.co.kr)로만 접수 ※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4. 7. 8.(월) ~ 7. 15.(월)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사항, 직무적합성,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일 '24. 7. 22.(월) 개별통보
인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기간제는 미 실시, 공무원 중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에서 제외 검사결과는 면접위원회에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 	'24. 7. 24.(수) ~ 7. 25.(목) 개별안내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24. 7. 30.(화) 면접시간·장소 개별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2명 선발 	'24. 8. 5.(월) 개별안내
임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직의 경우, 임용 후 3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24. 8. 12(월)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 면접전형 시 제출)
공통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 7. 15.)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공통	2. 우대사항 관련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024. 7. 15.)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시설직	1. 우대사항은 공통사항과 동일
시설직	2. (경력사항 관련)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2)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는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이며, 공무원은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 7. 15.)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과는 무관)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4. 8. 5. ~ 8. 20.)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nps.recruiter.co.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44-715-181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8.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증 인정기준

- ※ 모든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 7. 15.)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 ※ 분야별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함
ex)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을 모두 취득한 경우, 1급만 기재

구 분	분 야	자 격 증
장애등록상담직, 사업장상담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구1급)
	사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1·2급
	사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 1·2·3급